|  |  |  |
| --- | --- | --- |
| **코로나19 방역 세수우대정책 핫이슈 Q&A**  국가세무총국, 2020년 3월 3일  **分享到:**  **Q1. 만약 2월 납세신고기간이 연기된 후, 납세자가 코로나19 영향을 받아서 정해진 기한내 납세신고를 완성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A1: <국가세무총국의 납세납부서비스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인 코로나19 방역 작업에 맞춰 최적하는 것에 관한 통지> (세총함 [2020] 19호) 제2조 규정에 근거하여 납세자, 원천징수의무자가 코로나19 영향을 받아 2020년 2월분 납세신고기간이 연장된 후에도 여전히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 법에 의거 조금 더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 2월 납세신고기간이 연기된 후, 납세자는 기존 납세신고기간 전까지 증치세 세금계산서 데이터를 제출할 필요가 있나요?**  A2: <국가세무총국의 납세납부서비스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인 코로나19 방역 작업에 맞춰 최적하는 것에 관한 통지> (세총함 [2020] 19호) 제2조 규정에 근거하여 세무기관은 미리 상응조치를 취하여 납세신고기간이 연장된 후, 납세자 세금계산서 발행기기의 정상적인 사용과 증치세 세금계산서의 정상적인 수령과 발행을 확실히 보증해야 합니다.  이로써, 납세자는 자신의 실제상황에 맞춰 연장한 후의 납세신고기간 전까지 증치세 세금계산서 발행 소프트웨어를 등록하여 증치세 세금계산서 데이터 전송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즉, 정상적으로 증치세 세금계산서를 수령하고 발행할 수 있습니다.  **Q3. 기업이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 2020년에 비교적 큰 결손이 발생할 경우, 결손을 보존하는 이월결손금 연한을 연장할 수 있나요?**  A3: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인 코로나19 방역 관련 세수정책을 지원하는 것에 관한 공고> (재정부, 세무총국공고 2020년 제8호) 제4조 규정에 근거하여 코로나19 영향을 비교적 크게 받아 어려움에 처한 업종의 기업이 2020년도에 발생하는 결손에 대해서는 이월결손금 연한을 5년에서 최장 8년으로 연장합니다.  어려움에 처한 업종의 기업은 교통운수, 요식업, 숙박업, 여행업(여행사 및 관련 서비스, 관광구역 관리 2가지 업종 지칭)의 4대 업종을 포함하고,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현행 <국민경제업종분류>에 따라 집행합니다. 어려움에 처한 업종 기업의 2020년 주업무매출액은 반드시 매출총액(비과세수입과 투자수익 제외)의 50% 이상을 차지해야 합니다.  제6조 규정에 따라 본 공고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실시하고, 종료일은 코로나19 상황을 살펴 별도 공고합니다.  **Q4. 코로나19 영향을 비교적 크게 받은 어려움에 처한 업종의 기업을 어떻게 판정합니까?**  A4: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인 코로나19 방역 관련 세수정책을 지원하는 것에 관한 공고> (재정부, 세무총국공고 2020년 제8호) 제4조 규정에 근거하여 어려움에 처한 업종 기업은 교통운수, 요식업, 숙박업, 여행업(여행사 및 관련 서비스, 관광구역 관리 2가지 업종 지칭)의 4대 업종을 포함하고,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현행 <국민경제업종분류>에 따라 집행합니다. 어려움에 처한 업종 기업의 2020년 주업무매출액은 반드시 매출총액(비과세수입과 투자수익 제외)의 50% 이상을 차지해야 합니다.  **Q5. 단위가 개인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인 코로나19 예방용으로 지급한 약품, 의료용품 및 방호용품 등 실물(현금 불포함)은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A5: <재정부, 세무총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인 코로나19 방역 관련 개인소득세 정책을 지원하는 것에 관한 공고> (재정부, 세무총국공고 2020년 제10호) 제2조 규정에 근거하여 단위가 개인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인 코로나19 예방용으로 지급한 약품, 의료용품 및 방호용품 등 실물(현금 불포함)은 급여, 상여금으로 계상하지 않으며 개인소득세를 면제합니다.  제3조 규정에 따라 본 공고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실시하고, 종료일은 코로나19 상황을 살펴 별도 공고합니다.  **Q6. 세무기관은 코로나19 방역과 기업의 생산재개, 생산량 확대 방면에 조력함에 있어 어떠한 조치가 있나요?**  A6: <국가세무총국의 세수직능작용을 충분히 발휘하여 코로나19 방역 저지전 승리에 조력하는 몇 가지 조치에 관한 통지> (세총발 [2020] 14호) 제1조 규정: 세수우대정책을 성실히 수행하고, 코로나19 방역과 기업의 생산재개와 생산량 확대에 조력합니다.  (1) 코로나19 방역을 지원하는 세수우대정책을 틀림없이 수행합니다. 코로나19 방역을 지원하는 세수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정치적 책임을 확실히 다하고, 2020년 2월 1일과 2월 6일에 새로 출범한 ‘6가지 세금’ & ‘2가지 비용’과 관련된 12개 정책 및 지방이 법정권한 범위내에서 출범한 정책에 대하여 즉각 정보시스템을 조정하여 최적화하고, 내부적인 교육강도를 높이며, 처리조작절차를 간소화하여, 최대한 인터넷 온라인 방식을 사용하여 납세자와 납부자에게 정책홍보지도를 전개하고, 적극적으로 발전개혁위원회 및 공업과정보화부 등 부처와 소통을 강화하여, 정책이 간단하고 쉽게 활용될 수 있도록 확보하고, 납세자와 납부자가 적시에 정책을 전반적으로 이해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응향진향(应享尽享), 응향쾌향(应享快享)[[1]](#footnote-1)을 실현합니다. 기타 세수우대정책 중 특히 국가가 실시하는 더 큰 규모의 세금감면, 비용인하에 대한 정책조치 또한 더욱 세세히 실행하여 정책 실시성과를 공고히 하고 확대해야 합니다.  (2) 코로나19 방역을 지원하는 세수우대 정책 가이드를 제작합니다. 세무총국은 <신종 코로나19 방역 세수우대정책 가이드>를 제작 발표하여, 납세자와 납부자가 관련 정책과 징수관리 규정을 더욱 잘 파악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합니다. 각급 세무기관은 정책 가이드와 대조하여 시행강도를 점차 높이고, 전반적으로 정확하게 안착될 수 있도록 확실히 보증해야 합니다.  (3) 세수정책 집행상황의 감독평가를 확실히 강화합니다. 성과평가와 특별감독 등의 방식을 통해, 코로나19 방역을 지원하는 세수정책 집행상황에 대한 독촉조사를 강화하고, 기율요구를 엄격하고 명확히 하여 정책집행을 확실히 보증합니다. 정책 운영상황의 통계계산과 추적분석을 강화하고 적극적으로 논의해 개선된 의견∙건의를 제기합니다.  **Q7. 코로나19 영향을 받아 생산경영에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한 기업은 세금납부 연기를 신청할 수 있나요?**  A7: <국가세무총국의 세수직능작용을 충분히 발휘하여 코로나19 방역 저지전 승리에 조력하는 몇 가지 조치에 관한 통지> (세총발 [2020] 14호) 규정: (15) 법에 의거 세금납부 연기를 처리합니다. 코로나19 영향을 받아 생산경영에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한 기업, 특히 소형기업에 대해서는 세무기관이 법에 의거 즉시 세금납부 연기신청을 허가하고, 적극적으로 기업이 자금압력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줍니다.  **Q8. 코로나19 방역기간 납세자는 온라인으로 수출 퇴세(세금 환급) 관련 사항을 처리할 수 있나요?**  A8: <국가세무총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인 코로나19 방역 관련 세수징수관리 사항을 지원하는 것에 관한 공고> (국가세무총국공고 2020년 제4호) 제5조 규정: 코로나19 방역기간 납세자는 전자세무국 또는 국제무역 ‘단일창구’ 수출퇴세플랫폼 표준 버전(이하 ‘온라인’으로 약칭)을 통해 전자데이터를 제출함으로써 수출 세금 환급(면제) 비안, 비안변경 및 관련증명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무기관은 상기 세금 환급(면제) 사항에 관한 신청을 접수한 후, 전자데이터에 오류가 없음을 확인한 경우 비안, 비안변경을 처리하거나 관련 증명서를 발급하고, 아울러 온라인 피드백 방식을 통해 적시에 처리결과를 납세자에게 고지합니다. 납세자가 종이 증명서 발급을 필요한 경우, 세무기관은 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습니다. 세금 정산∙환급(면제) 또는 세금 보충납부의 비안과 증명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세무서 서비스센터 방문이 필요한 경우, 세무처리 예약 등 방식으로 서로 다른 시간대에 세무기관을 방문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19 방역기간 납세자의 모든 화물∙용역 수출, 국경을 넘는 과세행위는 모두 온라인으로 전자데이터를 제출하여 수출 세금환급(면제) 신고 수속을 이행할 수 있습니다. 세무기관은 신고 접수 후, 수출세금 부당환급 편취 등이 의심되지 아니할 경우 수출세금 환급(면제) 수속을 처리하고 온라인 피드백 방식을 통해 적시에 처리결과를 납세자에게 고지합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납세자가 규정된 기간 내에 관련 증명서 발행을 신청하지 못하였거나 수출세금 환급(면제)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세금 환급(면제) 증빙과 관련 전자정보 구비 후, 주관세무기관에 관련 증명서 발급을 신청하거나 세금 환급(면제)을 신고 처리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납세자가 규정된 기간 내에 외화수입결제를 할 수 없거나 외화수입결제불가 수속을 진행할 수 없을 경우, 외화수입결제가 이뤄진 후 또는 외화수입결제불가 수속을 이행한 후 관할세무기관에 세금환급(면제)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방역이 종료된 후 납세자는 현행규정에 따라 주관세무기관에 수출세금 환급(면제) 수속에 필요한 종이 신고표, 명세서 및 관련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세무기관은 추가로 제출한 각종 자료에 대한 2차 심사를 실시합니다.  **Q9. 코로나19 방역작업을 잘 진행하기 위해 세무기관은 세금계산서 공급 보장에 있어 어떠한 조치를 마련하였나요?**  A9: <국가세무총국의 세수직능작용을 충분히 발휘하여 코로나19 방역 저지전 승리에 조력하는 몇 가지 조치에 관한 통지> (세총발 [2020] 14호) 규정: ‘(16) 세금계산서 공급을 확실히 보장합니다. 의료구급 치료설비, 검측기기, 방호용품, 살균소독제, 약품 등 코로나19 방역 중점 보장물자를 생산 또는 판매하거나 이러한 물자에 대한 운송서비스를 제공하는 납세자가 증치세 세금계산서 ‘증판’, ‘증량’을 신청하는 경우, 수요에 맞춰 그 세금계산서 수령 수량과 최고발행한도를 잠시 조정할 수 있고, 사전 실지검사를 진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세수위법행위 발생 등의 상황을 제외하고는 코로나19 기간 납세자의 생산경영 상황 변화로 인해 그 증치세 세금계산서 수령 수량과 최고발행한도를 줄일 수는 없습니다.’  **Q10. 코로나19 방역업무를 잘 진행하기 위해 세무법률 집행방식에 있어 최적화가 되었나요?**  A10: <국가세무총국의 세수직능작용을 충분히 발휘하여 코로나19 방역 저지전 승리에 조력하는 몇 가지 조치에 관한 통지> (세총발 [2020] 14호) 규정: (17) 세무법률 집행방식을 최적화한다. ‘리스크가 없는 경우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비준이 없는 경우 업체에 방문하지 않으며, 법을 위반하지 않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을 중지하지 않는다’라는 요구를 진일보 실현하고, 주로 사건 발생 초반 상황부터 분석하는 것을 견지하여, 빅데이터의 장점을 충분히 발휘해 ‘온라인+감독관리’를 심도 있게 추진합니다. 코로나19 방역기간 업체에 직접 방문하여 조사하는 것을 삼가거나 뒤로 늦추고, 납세자의 생산경영소재지에 방문하여 현장조사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서는 본 급(级) 세무기관 책임자의 확인을 거쳐 코로나19가 사태가 통제되거나 끝난 후 처리가 가능하며, 세무처리 서비스센터에서 본인인증을 거쳐야 하는 인원은 등기증서, 신분증 등을 검사하는 방식을 통해 인증을 진행하고, 당분간 ‘안면인식’ 인증 진행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코로나19 방역을 틈타 세수혜택을 편취하거나 세금계산서 허위 발행으로 세금을 편취하는 등 세무와 관련된 위법행위는 법에 의거 조사하여 처리함을 견지합니다.  **Q11.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아 지연신고 또는 기한을 경과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한 납세자는 행정처벌을 받거나 납세신용등급에 영향을 받게 되나요?**  A11:<국가세무총국의 세수직능작용을 충분히 발휘하여 코로나19 방역 저지전 승리에 조력하는 몇 가지 조치에 관한 통지> (세총발 [2020] 14호) 규정: (18) 법에 의거 권익 보장을 강화합니다.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아 지연신고 또는 기한을 경과하여 관련 서류를 제출한 납세자는 행정처벌을 면제하고, 관련 기록을 납세자신용평가에 포함시키지 않으며, 기간을 경과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에 대해 잠정적으로 현행법 규정에 따라 비정상사용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은 행정재심 신청인의 법정 신청기한이 지체될 경우, 신청기한은 영향이 해소되는 날로부터 계속하여 계산합니다. 행정재심 청문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등 경우 세무기관은 법에 의거 심리를 중지하고, 코로나19 영향이 해소된 후 곧 원래대로 진행합니다.  **Q12. 2월초 당사는 마스크, 소독용 알코올 등 의료용 물자를 구매하여 적십자회를 통해 무상으로 기부하여 코로나19를 극복하고자 사용하였는데 규정에 따르면 증치세 면제징수 우대혜택을 향유할 수 있습니다. 적십자회에서 당사에 기부수령 영수증을 발급해 주었는데 해당 영수증이 무상기부의 증빙자료가 될 수 있나요?**  A12: 가능합니다. <국가세무총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인 코로나19 방역 관련 세수징수관리 사항을 지원하는 것에 관한 공고> (국가세무총국공고 2020년 제4호) 규정에 근거하면 납세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인 코로나19 방역 관련 세수정책을 지원하는 것에 관한 공고> (재정부, 세무총국공고 2020년 제8호)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인 코로나19 방역 관련 기부 세수정책 지원에 관한 공고> (2020년 제9호)의 유관 규정에 따라 증치세, 소비세 혜택을 받을 경우, 자체적으로 면세신고를 진행할 수 있으며, 관련 면세 비안 수속을 처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관련 증빙자료는 보관 비치해야 합니다. 귀사가 적십자회에서 발급한 기부 수령 영수증을 취득하여, 귀사의 무상기부행위를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무상기부의 증빙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귀사는 조사 대비용으로 기부수령 영수증을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Q13. 당사는 코로나19 방역임무를 수행하는 병원에 직접 자체 생산한 보안경을 무상으로 기부하여 신종 코로나19 방역에 사용하였는데 규정에 따르면 증치세 면제징수 우대혜택을 향유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당사는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행해야 하나요?**  A13: <중화인민공화국 증치세 임시조례> 제21조 규정에 따르면, 납세자의 과세매출행위가 면세 규정에 적용될 경우, 증치세 전용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귀사는 <재정부, 세무총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인 코로나19 방역 관련 기부 세수정책 지원에 관한 공고> (2020년 제9호)에서 규정한 증치세 징수면제 행위에 부합되므로 증치세 전용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는 없으나 보통세금계산서는 발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귀사가 세율 또는 징수율 란을 명시한 보통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면 세율 또는 징수율 란에 ‘면세’를 기재해야 합니다.  **Q14. 당사는 수출기업으로 2019년 외국에 수출 판매한 화물이 품질원인으로 최근에 반송되었는데 세무기관으로부터 <수출화물반송 세금추가납입완료(세금미환급)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다시 세관에 가서 반송 수속을 처리해야 합니다. 상술한 화물은 아직 수출 세금 환급(면제)신고를 하지 않은 상황인데 당사는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A14: <국가세무총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인 코로나19 방역 관련 세수징수관리 사항을 지원하는 것에 관한 공고> (국가세무총국공고 2020년 제4호) 규정에 근거하여 코로나19 방역기간 납세자는 전자세무국 또는 국제무역 ‘단일창구’ 수출퇴세플랫폼 표준 버전 등을 통해 전자데이터를 제출한 후, 수출 세금 환급(면제) 관련 증명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에, 귀사는 전자세무국 또는 국제무역 ‘단일창구’ 수출퇴세플랫폼 표준 버전 등을 통해 <반송 세금추가납입완료(세금미환급)증명 신청표>의 전자 데이터를 제출하면 세무기관에서 심사통과 후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수출화물반송 세금추가납입완료(세금미환급)증명서>를 발급해 드릴 것이고, 또한 온라인을 통해 귀사에 처리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드릴 것입니다. 만약 귀사가 세관에서 세금환급 수속 처리 시, 종이로 된 <수출화물반송 세금추가납입완료(세금미환급)증명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세무기관에 연락할 수 있으며 주관세무기관에서 종이로 된 증명자료를 귀사가 지정한 주소지에 우편으로 송부할 것입니다.  **Q15. 당사는 산동성에 위치한 무역기업으로 2019년 12월, 호북성에 위치한 의류생산기업으로부터 의류를 납품 받아 한국으로 수출하였는데 해당 호북성 기업이 당사에게 발행한 증치세 전용세금계산서가 우편으로 송부되는 과정에서 분실되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상대방측에서 단기간 내 당사에 세금계산서를 제공해줄 수 없으므로, 당사는 4월 세금 환급(면제) 신고기한 전까지 세금환급 증빙을 모일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라도 당사는 수출 세금환급신고를 할 수 있나요?**  A15: <국가세무총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인 코로나19 방역 관련 세수징수관리 사항을 지원하는 것에 관한 공고> (국가세무총국공고 2020년 제4호)와 현행 수출 세금환급 정책 규정에 근거하여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아 정해진 기한내 수출 세금 환급(면제)신고를 진행할 수 없게 될 경우, 세금 환급(면제) 증빙과 관련 전자정보를 전부 수집한 후 세금 환급(면제)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귀사가 2020년 4월 세금 환급(면제) 신고기한 이전까지 세금 환급(면제) 관련 증빙과 관련 전자정보를 전부 수집할 수 없는 경우,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세금 환급(면제) 증빙과 관련 전자정보를 전부 수집한 후 다시 세금 환급(면제)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Q16. 코로나19 기간에 당사는 직원들에게 마스크 구매비용을 지급하였는데 이 경우, 기업소득세 세전공제가 가능하나요?**  A16: 귀사가 직원들에게 지급한 마스크 구매비용은 기업소득세 세전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현금 보조금(수당)을 지급한 경우에는 직원의 복리후생비용으로 세전공제가 가능합니다.  **Q17. 저희는 요식업에 종사하는 기업입니다.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아 지난 해에 예약한 일부 예약이 취소되면서 이미 구매한 식자재를 판매할 수 없게 되었고 또한 이미 변질된 상태인데 이러한 손실도 기업소득세 세전공제가 가능하나요?**  A17: 요식업에 종사하는 기업의 경우 식자재는 재고에 해당하고, 변질이 일어난 상황에서는 <국가세무총국의 ‘기업자산손실 소득세 세전공제 관리방법’ 발표에 관한 공고> (국가세무총국공고 2011년 제25호)의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세전공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세무총국의 기업소득세 자산손실 자료 비치 유관사항에 관한 공고> (국가세무총국공고 2018년 제15호)의 규정에 근거하여 기업에 자산손실이 발생할 경우, 기업소득세 연간납세신고표 <자산손실 세전공제 및 납세조정명세표>만 작성하면 되고, 자산손실 관련 자료는 더 이상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관련 자료는 기업에서 보존 비치하시면 됩니다.  **Q18. 코로나19 기간에 작업장 안전과 청결위생을 유지하기 위해서 당사는 온라인에서 대량의 소독액을 구매하였으나 증치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증빙자료로 세전공제가 가능하나요?**  A18: <국가세무총국의 ‘기업소득세 세전공제 증빙 관리방법’ 발표에 관한 공고> (국가세무총국공고 2018년 제28호) 규정에 근거하여, 기업이 국내에서 발생한 지출항목이 증치세 과세항목(이하 ‘과세항목’)에 해당할 경우, 상대방이 이미 세무등기를 처리한 증치세납세자이고, 그 지출은 세금계산서(규정에 따라 세무기관이 대리발행한 세금계산서 포함)로 세전공제 증빙이 됩니다. 상대방이 법에 의거 세무등기를 처리할 필요가 없는 단위이거나 또는 소액 단발성 경영업무에 종사하는 개인일 경우, 그 지출은 세무기관이 대리 발행하는 세금계산서 또는 수취 증빙 및 내부 증빙으로 세전공제 증빙이 가능합니다. 수취 증빙에는 수취단위명칭, 개인성명 및 신분증번호, 지출항목, 수취금액 등 관련정보를 기재해야 합니다.  **Q19. 재정부, 세무총국공고 2020년 제10호: 단위가 개인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코로나19 예방 용도로 약품, 의료용품 및 방호용품 등 실물(현금 불포함)을 나눠줄 경우 급여 및 상여금에 계상하지 않고, 개인소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문건에서의 ‘약품’, ‘의료용품’, ‘방호용품’은 모두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나요?**  A19: 약품, 의료용품, 방호용품의 종류가 매우 많다는 것을 고려했을 때 정책상 일일이 열거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에 원칙적으로 신종 코로나19 예방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약품, 의료용품, 방호용품물자 예를 들어 마스크, 보안경, 소독액, 장갑, 방호복 등이라면 모두 재세 2020년 10호 공고와 관련된 면세 규정을 향유할 수 있습니다.  **Q20. 재정부, 세무총국공고 2020년 제9호 제1, 2, 3조에서 언급한 물품과 화물의 구체적인 범위가 있나요?**  A20: 재정부, 세무총국공고 2020년 제9호 제1, 2조와 관련된 소득세 기부는 어떠한 물품이라도 전액 공제를 누릴 수 있는 질문입니다.   2020년 9호 문건 규정에 근거하여 기업과 개인이 조건에 부합하는 공익성 사회조직, 국가기관을 통해 기부하거나 또는 직접 코로나19 방역 업무를 담당하는 병원에 기부하고, 이러한 기부의 용도가 신종 코로나19 대응용이라면 바로 전액 공제 정책을 향유할 수 있습니다. 세수 정책은 기부를 강조한 용도이며 어떠한 물품과 화물을 기증한 것은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Q21. 납세자는 1월에 증치세 전용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일시적으로 세금계산서 폐기 및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어, 문건 요구에 따라 증치세 면세징수 관련 정책집행이 만료된 후 1개월 내 발행이 완료되도록 준비하여 2월 귀속기간 증치세 납세 신고를 처리하고자 할 경우, 우선적으로 면세 신고에 따를 수 있나요?**  A21: <국가세무총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인 코로나19 방역 유관 세수징수 관리사항 지원에 관한 공고> (2020년 제4호) 제3조 규정에 따라, 납세자는 8호 공고와 9호 공고 관련 증치세 면제징수 정책을 적용할 경우, 증치세 전용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이미 증치세 전용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에는 대응하는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기존 세금계산서를 폐기하고, 규정에 따라 증치세 면제징수 정책을 적용하여 보통세금계산서를 재발행하여야 합니다.  납세자는 코로나19 방역기간 이미 증치세 전용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대응하는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나 적시에 발행하지 못한 경우, 우선적으로 증치세 면제징수 정책을 적용할 수 있으며, 대응하는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는 관련 증치세 면제징수 정책 집행이 만료된 후 1개월 내 발행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납세자는 2월 귀속기간 증치세 납세 신고를 처리할 때, 우선적으로 면세에 맞춰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Q22. 당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방지용으로 마스크, 알코올 등 방호용품을 구매하여 직원들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구매 시, 증치세 전용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데 이에 대한 부분은 ‘그룹 복리용’ 매입세액으로 적용할 수 있나요? 아니면 공제할 수 없나요?**  A22: 증치세 임시조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귀사에서 코로나19 기간 구매한 마스크, 소독액 등의 방호용품은 동 기업 업무재개용으로 사용한 경우, 특수 기간의 노동자 보호용품에 속하므로 합법적이고 유효한 세금공제 증빙을 취득하였다면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Q23. 코로나19 원인으로 인해 당사는 장기로 당사 공장을 임차한 기업에게 3개월치 임대료를 감면해 주었습니다. 이럴 경우, 해당 3개월에 대응하는 임대료는 증치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임차료는 미리 수령하였기에 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도 발행해 주었습니다. 당사는 3개월 임대료를 돌려준 후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A23: <국가세무총국의 토지대금 공제기간 등 증치세 징수관리 문제에 관한 공고> (2016년 제86호) 규정에 근거하여 납세자가 부동산을 임대하고, 임대차계약서에 임대면제기간을 약정한 경우라면 <영업세의 증치세 개정징수 시범시행 실시방법> (재세 [2016] 36호 첨부 1) 제14조에 규정된 간주판매서비스에 속하지 않으므로 증치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귀사는 임대차 보충협의서를 체결하여 상술한 임대면제기간 증치세 정책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귀사는 이미 임대료를 수령하였고 세금계산서도 발행하였기에 반환한 3개월치 임대료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대응하는 임대료 금액과 상계하여야 합니다.  **Q24. 코로나19 영향을 비교적 크게 받은 어려운 업종일 경우, 코로나19의 비교적 큰 영향을 받았다고 증명하기 위해서 기업은 어떤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하나요?**  A24: <국가세무총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인 코로나19 방역 유관 세수징수 관리사항 지원에 관한 공고> (2020년 제4호) 규정에 근거하여, 납세자는 어려운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인지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또한 주영업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요구에 부합해야 합니다. 2020년도에 적자가 발생하여 결손금 이월연한을 기존 5년에서 8년까지 연장하는 정책을 향유하고자 할 경우에는 2020년도 기업소득세 연말정산 시, 전자세무국을 통해 <결손금 이월연한 연장 정책 적용 성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납세자는 <결손금 이월연한 연장 정책 적용 성명서>에 납세자 명칭, 납세자 식별번호(통일사회신용대마), 해당하는 구체적인 업종의 3가지 항목 정보를 기입하고, 또한 정책규정에 부합하며, 주영업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요구에 부합하고, 어려운 업종에 속한다고 체크하는 등 이러한 정보의 진실성, 정확성, 완전성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Q25. 기업이 구매한 방호물자 예를 들어 마스크, 방호복, 소독액 등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없을 경우에도 세전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25: <국가세무총국의 ‘기업소득세 세전공제 증빙 관리방법’ 발표에 관한 공고> (국가세무총국공고 2018년 제28호) 규정에 근거하여 기업의 경내에서 발생한 지출항목이 증치세 과세항목에 해당하고, 상대방이 이미 세무등기를 처리한 증치세납세자일 경우, 그 지출은 세금계산서(규정에 따라 세무기관에서 대리 발행한 세금계산서도 포함)로 세전공제 증빙을 처리합니다.  상대방이 법에 의거 세무등기를 처리할 필요가 없는 단위 또는 소액 단발성 경영업무에 종사하는 개인일 경우, 그 지출은 세무기관이 대리 발행한 세금계산서나 대금수령 증빙 및 내부 증빙으로 세전공제 증빙을 처리하고, 대금수령 증빙에는 대금수령 단위명칭, 개인성명 및 신분증번호, 지출항목, 수령금액 등 관련 정보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Q26. 현급 이상의 인민정부 및 그 부처를 통해 기부하는 것은 어떻게 이해하나요? 정부의 어느 부처에게나 기부하여도 되나요?**  A26: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인 코로나19 방역 관련 기부 세수정책 지원에 관한 공고> (재정부, 세무총국공고 2020년 제9호) 규정에 근거하여 기업과 개인은 공익성 사회조직 또는 현급 이상의 인민정부 및 그 부처 등 국가기관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인 코로나19 용으로 기부한 현금과 물품은 과세소득액 계산 시, 전액공제를 허용합니다.  따라서 정부의 어느 부처(예를 들어 민정국, 위생국 등)에 관계없이 현급 및 그 이상의 조건에 부합하고 국가기관 범위에 속하기만 한다면 기부자가 그 부처를 통해 기부한 것에 대해서는 전액 공제의 우대 정책을 향유할 수 있습니다.  **Q27. 코로나19 영향을 받아 중대한 손실이나 심한 적자가 발생하여 납세자가 확실히 어려운 기업이라면 방산세 및 성진토지사용세에 대한 어떤 감면정책이 있나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A27: 방산세 임시조례 규정에 따라, 납세자가 납세를 하기 확실히 어려운 경우라면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에서 확정하여 방산세를 일정 기간 감면 징수하거나 면제 징수할 수 있습니다. 성진토지사용세 임시조례 규정에 따라, 납세자는 토지사용세를 납부하기에 확실히 어렵고 일정 기간 감면이 필요하다면 현급 이상 세무기관에서 허가합니다.  납세자가 코로나19 영향을 받아 중대한 결손이 발생하여 세금을 납부하기 확실히 어려운 경우, 현지 유관 규정에 따라 2가지 세금(방산세와 성진토지사용세) 납부 어려움에 따른 감면을 신청하고, 구체적인 처리는 현지 주관 세무기관에 건의·상의할 수 있습니다.  **Q28. 코로나19 원인으로 인해 기업이 중대한 손실을 입었거나 정상적인 생산경영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받은 중소기업이 방산세 및 성진토지사용세를 감면 신청할 수 있나요? 기업의 신청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28: 코로나19 원인으로 인해 기업이 중대한 손실을 입었거나 정상적인 생산경영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받은 중소기업이 만약 현지 인민정부와 세무부처가 발표한 방산세 및 성진토지사용세 우대 정책에 부합할 경우, 2가지 세금(방산세와 성진토지사용세) 감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절차는 현지세무기관에 상담하시길 건의합니다. |  | **防控疫情税收优惠政策热点问答**  国家税务总局，2020年3月3日  **分享到:**  **1.若2月申报纳税期延期后，纳税人受疫情影响还是无法在规定期限内完成纳税申报的，该如何处理?**  答：根据《国家税务总局关于优化纳税缴费服务配合做好新型冠状病毒感染肺炎疫情防控工作的通知》(税总函〔2020〕19号)第二条规定，纳税人、扣缴义务人受疫情影响，在2020年2月份申报纳税期限延长后，办理仍有困难的，还可依法申请进一步延期。  **2.2月申报纳税期延期后，纳税人是否需要在原申报纳税期限之前报送增值税发票数据?**  答：根据《国家税务总局关于优化纳税缴费服务配合做好新型冠状病毒感染肺炎疫情防控工作的通知》(税总函〔2020〕19号)第二条规定，税务机关将提前采取相应措施，确保申报纳税期限延长后，纳税人的税控设备能够正常使用，增值税发票能够正常领用和开具。  为此，纳税人可以根据自身实际情况，在延长后的申报纳税期限之前，登录增值税发票税控开票软件并完成增值税发票数据报送，即可正常领用和开具增值税发票。  **3.企业因受疫情影响，2020年产生较大亏损，弥补亏损的结转年限是否可以延长?**  答：根据《关于支持新型冠状病毒感染的肺炎疫情防控有关税收政策的公告》(财政部 税务总局公告2020年第8号)第四条规定，受疫情影响较大的困难行业企业2020年度发生的亏损，最长结转年限由5年延长至8年。  困难行业企业，包括交通运输、餐饮、住宿、旅游(指旅行社及相关服务、游览景区管理两类)四大类，具体判断标准按照现行《国民经济行业分类》执行。困难行业企业2020年度主营业务收入须占收入总额(剔除不征税收入和投资收益)的50%以上。  第六条规定，本公告自2020年1月1日起实施，截止日期视疫情情况另行公告。  **4.受疫情影响较大的困难行业企业如何判定?**  答：根据《关于支持新型冠状病毒感染的肺炎疫情防控有关税收政策的公告》(财政部 税务总局公告2020年第8号)第四条规定，困难行业企业，包括交通运输、餐饮、住宿、旅游(指旅行社及相关服务、游览景区管理两类)四大类，具体判断标准按照现行《国民经济行业分类》执行。困难行业企业2020年度主营业务收入须占收入总额(剔除不征税收入和投资收益)的50%以上。  **5.单位发给个人用于预防新型冠状病毒感染的肺炎的药品、医疗用品和防护用品等实物(不包括现金)，是否需要缴纳个人所得税?**  答：根据 《财政部 税务总局关于支持新型冠状病毒感染的肺炎疫情防控有关个人所得税政策的公告》(财政部 税务总局公告2020年第10号)第二条规定，单位发给个人用于预防新型冠状病毒感染的肺炎的药品、医疗用品和防护用品等实物(不包括现金)，不计入工资、薪金收入，免征个人所得税。  第三条规定，本公告自2020年1月1日起施行，截止日期视疫情情况另行公告。  **6. 税务机关在助力疫情防控和企业复产扩能方面有哪些措施?**  答：《国家税务总局关于充分发挥税收职能作用 助力打赢疫情防控阻击战若干措施的通知》(税总发〔2020〕14号)第一条规定：认真落实税收优惠政策，助力疫情防控和企业复产扩能。  (一)不折不扣落实支持疫情防控的税收优惠政策。坚决扛牢落实支持疫情防控税收政策的政治责任，对2020年2月1日和2月6日新出台涉及“六税”“两费”的十二项政策以及地方在法定权限范围内出台的政策，及时优化调整信息系统，加大内部培训力度，简化办理操作程序，尽量采取网上线上方式向纳税人、缴费人开展政策宣传辅导，积极加强与发改、工信等部门沟通，确保政策简明易行好操作，让纳税人、缴费人及时全面懂政策、会申报，实现应享尽享、应享快享。对其他税收优惠政策特别是国家实施的更大规模减税降费政策措施也要进一步落实落细，巩固和拓展政策实施成效。  (二)编制支持疫情防控的税收优惠政策指引。税务总局编制发布《新冠肺炎疫情防控税收优惠政策指引》，便利纳税人、缴费人更好地了解掌握相关政策和征管规定。各级税务机关要对照政策指引逐项加大落实力度，确保全面精准落地。  (三)切实加强税收政策执行情况的监督评估。通过绩效考评和专项督查等方式，加强对支持疫情防控税收优惠政策执行情况的督促检查，严明纪律要求，确保政策执行不打折扣。加强政策运行情况的统计核算和跟踪分析，积极研究提出改进完善的意见建议。  **7.对受疫情影响生产经营发生严重困难的企业是否可以申请延期缴纳税款?**  答：《国家税务总局关于充分发挥税收职能作用 助力打赢疫情防控阻击战若干措施的通知》(税总发〔2020〕14号)规定：(十五)依法办理延期缴纳税款。对受疫情影响生产经营发生严重困难的企业特别是小微企业，税务机关要依法及时核准其延期缴纳税款申请，积极帮助企业缓解资金压力。  **8. 疫情防控期间纳税人是否可以在网上办理出口退税相关事项?**  答：《国家税务总局关于支持新型冠状病毒感染的肺炎疫情防控有关税收征收管理事项的公告》(国家税务总局公告2020年第4号)第五条规定：疫情防控期间，纳税人通过电子税务局或者标准版国际贸易‘单一窗口’出口退税平台等(以下简称‘网上’)提交电子数据后，即可申请办理出口退(免)税备案、备案变更和相关证明。  税务机关受理上述退(免)税事项申请后，经核对电子数据无误的，即可办理备案、备案变更或者开具相关证明，并通过网上反馈方式及时将办理结果告知纳税人。纳税人需开具纸质证明的，税务机关可采取邮寄方式送达。确需到办税服务厅现场结清退(免)税款或者补缴税款的备案和证明事项，可通过预约办税等方式，分时分批前往税务机关办理。  疫情防控期间，纳税人的所有出口货物劳务、跨境应税行为，均可通过网上提交电子数据的方式申报出口退(免)税。税务机关受理申报后，经审核不存在涉嫌骗取出口退税等疑点的，即可办理出口退(免)税，并通过网上反馈方式及时将办理结果告知纳税人。  因疫情影响，纳税人未能在规定期限内申请开具相关证明或者申报出口退(免)税的，待收齐退(免)税凭证及相关电子信息后，即可向主管税务机关申请开具相关证明，或者申报办理退(免)税。  因疫情影响，纳税人无法在规定期限内收汇或办理不能收汇手续的，待收汇或办理不能收汇手续后，即可向主管税务机关申报办理退(免)税。  疫情防控结束后，纳税人应按照现行规定，向主管税务机关补报出口退(免)税应报送的纸质申报表、表单及相关资料。税务机关对补报的各项资料进行复核。  **9.为做好疫情防控工作，税务机关在保障发票供应上有哪些举措?**  答：《国家税务总局关于充分发挥税收职能作用 助力打赢疫情防控阻击战若干措施的通知》(税总发〔2020〕14号)规定：“(十六)切实保障发票供应。对生产和销售医疗救治设备、检测仪器、防护用品、消杀制剂、药品等疫情防控重点保障物资以及对此类物资提供运输服务的纳税人，申请增值税发票‘增版’‘增量’的，可暂按需调整其发票领用数量和最高开票限额，不需事前实地查验。除发生税收违法行为等情形外，不得因疫情期间纳税人生产经营情况发生变化而降低其增值税发票领用数量和最高开票限额。”  **10.为做好疫情防控工作，税务执法方式上是否会有优化?**  答：《国家税务总局关于充分发挥税收职能作用 助力打赢疫情防控阻击战若干措施的通知》(税总发〔2020〕14号)规定：(十七)优化税务执法方式。进一步落实“无风险不检查、无批准不进户、无违法不停票”的要求，坚持以案头分析为主，充分发挥大数据优势，深入推进“互联网+监管”。在疫情防控期间，减少或推迟直接入户检查，对需要到纳税人生产经营所在地进行现场调查核实的事项，可经本级税务机关负责人确认，延至疫情得到控制或结束后办理;对确需在办税服务厅实名办税的人员，通过核验登记证件、身份证件等方式进行验证，暂不要求进行“刷脸”验证;对借疫情防控之机骗取税收优惠或虚开骗税等涉税违法行为，要坚决依法查处。  **11.对受疫情影响逾期申报或逾期报送相关资料的纳税人是否会受到行政处罚，影响纳税信用?**  答：《国家税务总局关于充分发挥税收职能作用 助力打赢疫情防控阻击战若干措施的通知》(税总发〔2020〕14号)规定：(十八)依法加强权益保障。对受疫情影响逾期申报或逾期报送相关资料的纳税人，免予行政处罚，相关记录不纳入纳税信用评价;对逾期未申报的纳税人，暂不按现行规定认定非正常户。对行政复议申请人因受疫情影响耽误法定申请期限的，申请期限自影响消除之日起继续计算;对不能参加行政复议听证等情形，税务机关依法中止审理，待疫情影响消除后及时恢复。  **12.2月初，我公司购买了一批口罩、消毒酒精等医用物资，通过红十字会无偿捐赠，用于抗击疫情，按照规定可以享受免征增值税优惠。红十字会给我公司开了一张接受捐赠票据，请问该票据可以作为无偿捐赠的证明材料吗?**  答：可以。根据《国家税务总局关于支持新型冠状病毒感染的肺炎疫情防控有关税收征收管理事项的公告》(国家税务总局公告2020年第4号)规定，纳税人按照《财政部 税务总局关于支持新型冠状病毒感染的肺炎疫情防控有关税收政策的公告》(2020年第8号)和《财政部 税务总局关于支持新型冠状病毒感染的肺炎疫情防控有关捐赠税收政策的公告》(2020年第9号)有关规定享受免征增值税、消费税优惠的，可自主进行免税申报，无需办理有关免税备案手续，但应将相关证明材料留存备查。你公司取得了红十字会开具的接受捐赠票据，能够证明你公司的无偿捐赠行为，因此可以作为无偿捐赠的证明材料。请你公司将接受捐赠的票据留存好，以备查验。  **13.我公司直接向承担疫情防治任务的医院无偿捐赠了一批自产的护目镜，用于防控新冠疫情，按照规定可以享受免征增值税优惠。请问，我们应当如何开发票?**  答：《中华人民共和国增值税暂行条例》第二十一条规定，纳税人发生应税销售行为适用免税规定的，不得开具增值税专用发票。你公司发生符合《财政部 税务总局关于支持新型冠状病毒感染的肺炎疫情防控有关捐赠税收政策的公告》(2020年第9号)规定的免征增值税行为，不能开具增值税专用发票，但是可以开具普通发票。如果你公司开的是注明税率或征收率栏次的普通发票，应当在税率或征收率栏次填写“免税”字样。  **14.我公司是一家出口企业，2019年出口销售给国外的一批货物，因为质量原因近期被退回，需要税务机关出具《出口货物退运已补税(未退税)证明》后，再去海关办理退运手续，上述货物还未申报出口退(免)税，现在我们应该如何办理?**  答：根据《国家税务总局关于支持新型冠状病毒感染的肺炎疫情防控有关税收征收管理事项的公告》(国家税务总局公告2020年第4号)规定，疫情防控期间，纳税人通过电子税务局或者标准版国际贸易“单一窗口”出口退税平台等提交电子数据后，即可申请办理出口退(免)税相关证明。因此，你公司可以通过电子税务局、标准版国际贸易“单一窗口”出口退税申报平台等提交《退运已补税(未退税)证明申请表》的电子数据，税务机关审核通过后，会尽快出具《出口货物退运已补税(未退税)证明》，并通过网络将办理结果反馈你公司。如果你公司在海关办理退税手续时，需要提供纸质《出口货物退运已补税(未退税)证明》，可以联系主管税务机关，主管税务机关会将纸质资料邮寄到你公司指定地址。  **15.我公司是一家山东的外贸企业，2019年12月，从湖北一家服装生产企业购进一批服装并出口至韩国，但湖北这家企业开给我公司的增值税专用发票在邮寄过程中丢失了，因疫情原因，对方短期内无法向我公司提供发票，可能造成我公司在4月退(免)税申报截止期前，无法收齐退税凭证，请问我公司是否还能申报出口退税?**  答：根据《国家税务总局关于支持新型冠状病毒感染的肺炎疫情防控有关税收征收管理事项的公告》(国家税务总局公告2020年第4号)和现行出口退税政策规定，受疫情影响，无法在规定期限内进行出口退(免)税申报的，待收齐退(免)税凭证和相关电子信息后，即可进行退(免)税申报。因此，若你公司在2020年4月退(免)税申报截止期前无法收齐相关退(免)税凭证和相关电子信息，可以在此后尽快收齐退(免)税凭证和相关电子信息，再进行退(免)税申报。  **16．疫情期间，我公司给员工发放的购买口罩的费用，能否进行企业所得税税前扣除？**  答：贵公司给员工发放的购买口罩的费用，可以在企业所得税税前扣除。如果发放现金补贴，可以作为职工福利费税前扣除。  **17．我是一家餐饮企业，受疫情影响，部分年前预定的酒席被退订，已经采购的食材无法售出并已经变质，请问能否作为损失在企业所得税税前扣除？**  答：食材属于餐饮企业的存货，发生变质的情况，可以根据《国家税务总局关于发布〈企业资产损失所得税税前扣除管理办法〉的公告》（国家税务总局公告2011年第25号）的相关规定进行税前扣除。并且，根据《国家税务总局关于企业所得税资产损失资料留存备查有关事项的公告》（国家税务总局公告2018年第15号）规定，企业发生资产损失，仅需填报企业所得税年度纳税申报表《资产损失税前扣除及纳税调整明细表》，不再报送资产损失相关资料。相关资料由企业留存备查。  **18．疫情期间，为了保证工作场所安全干净卫生，我公司在网上购买了一批消毒液，但是拿不到增值税发票，这种情况还能以什么作为凭证税前扣除?**  答：根据《国家税务总局关于发布<企业所得税税前扣除凭证管理办法>的公告》（国家税务总局公告2018年第28号）规定，企业在境内发生的支出项目属于增值税应税项目（以下简称“应税项目”）的，对方为已办理税务登记的增值税纳税人，其支出以发票（包括按照规定由税务机关代开的发票）作为税前扣除凭证；对方为依法无需办理税务登记的单位或者从事小额零星经营业务的个人，其支出以税务机关代开的发票或者收款凭证及内部凭证作为税前扣除凭证，收款凭证应载明收款单位名称、个人姓名及身份证号、支出项目、收款金额等相关信息。  **19.财政部 税务总局公告2020年第10号规定：单位发给个人用于预防新型冠状病毒感染的肺炎的药品、医疗用品和防护用品等实物(不包括现金)，不计入工资、薪金收入，免征个人所得税。请问这个文件里的“药品”、“医疗用品”、“防护用品”都包含什么内容？**  答：考虑到药品、医疗用品、防护用品种类很多，政策上难以将他们一一正列举，因此原则上，只要是与预防新冠肺炎直接相关的药品、医疗用品、防护用品物资，如口罩、护目镜、消毒液、手套、防护服等，都可以享受财税2020年10号公告有关免税的规定。  **20.财政部 税务总局公告2020年第9号第一、二、三条中提到的物品和货物是否有具体范围？**  答：财政部 税务总局公告2020年第9号第一、二条涉及所得税捐赠什么物品可以享受全额扣除政策的问题。  根据2020年9号文件规定，企业和个人只要通过符合条件的公益性社会组织、国家机关捐赠，或者直接向承担疫情防治任务的医院捐赠，并且这些捐赠的用途是用于应对新冠肺炎疫情的，即可享受全额扣除政策。即税收政策只强调捐赠的用途，而不限制捐赠了什么物品和货物。    **21.纳税人1月开具了增值税专用发票，由于暂时不能作废以及开具红字发票，准备按照文件要求在相关免征增值税政策执行到期后1个月内完成开具，请问在办理2月属期增值税纳税申报时，是否可以先按照免税申报？**  答：按照《国家税务总局关于支持新型冠状病毒感染的肺炎疫情防控有关税收征收管理事项的公告》（2020年第4号)第三条规定，纳税人适用8号公告和9号公告相关免征增值税政策的，不得开具增值税专用发票；已开具增值税专用发票的，应当开具对应红字发票或者作废原发票，再按规定适用免征增值税政策并开具普通发票。  纳税人在疫情防控期间已经开具增值税专用发票，应当开具对应红字发票而未及时开具的，可以先适用免征增值税政策，对应红字发票应当于相关免征增值税政策执行到期后1个月内完成开具。  因此，纳税人可以在办理2月属期增值税纳税申报时，先按照免税进行申报。  **22.我公司买来发给员工用于新型冠状病毒的口罩、酒精等防护用品，买的时候取得了增值税专用发票，这部分进项是否适用“用于集体福利”而无法抵扣？**  答：按照增值税暂行条例等相关规定，你公司在疫情期间购买的口罩、酒精等防护用品，用于本企业复工复产的，属于特殊时期的劳保用品，取得合法有效扣税凭证的，其进项税额可以从销项税额中抵扣。  **23.因为疫情原因，我公司给长期承租我方厂房的企业减免了三个月的租金，这三个月对应的租金是否需要缴纳增值税？由于租金已经提前预收并开发票给对方，我退还三个月租金后应如何处理？**  答：根据《国家税务总局关于土地价款扣除时间等增值税征管问题的公告》（2016年第86号）规定，纳税人出租不动产，租赁合同中约定免租期的，不属于《营业税改征增值税试点实施办法》（财税〔2016〕36号附件1）第十四条规定的视同销售服务，不征收增值税。  你公司可以通过签订租赁补充协议适用上述免租期增值税政策。由于你公司已提前预收租金并开票，因此退还的三个月租金，应开具红字发票，冲减对应的租金金额。  **24. 请问受疫情影响较大的困难行业，需要企业提供什么证明材料，以证明受到疫情的较大影响呢？**  答：根据《国家税务总局关于支持新型冠状病毒感染的肺炎疫情防控有关税收征收管理事项的公告》(国家税务总局公告2020年第4号)规定，纳税人应自行判断是否属于困难行业企业，且主营业务收入占比符合要求。2020年度发生亏损享受亏损结转年限由5年延长至8年政策的，应在2020年度企业所得税汇算清缴时，通过电子税务局提交《适用延长亏损结转年限政策声明》。  纳税人应在《适用延长亏损结转年限政策声明》填入纳税人名称、纳税人识别号(统一社会信用代码)、所属的具体行业三项信息，并对其符合政策规定、主营业务收入占比符合要求、勾选的所属困难行业等信息的真实性、准确性、完整性负责。  **25. 请问企业购买的防护物资如口罩、防护服、消毒液等，无法取得发票的，能在税前扣除吗？**  答：根据《国家税务总局关于发布<企业所得税税前扣除凭证管理办法>的公告》(国家税务总局公告2018年第28号)规定，企业在境内发生的支出项目属于增值税应税项目的，对方为已办理税务登记的增值税纳税人，其支出以发票(包括按照规定由税务机关代开的发票)作为税前扣除凭证;对方为依法无需办理税务登记的单位或者从事小额零星经营业务的个人，其支出以税务机关代开的发票或者收款凭证及内部凭证作为税前扣除凭证，收款凭证应载明收款单位名称、个人姓名及身份证号、支出项目、收款金额等相关信息。  **26. 通过县级以上人民政府及其部门捐赠，怎么理解？向政府哪个部门捐赠都可以吗？**  答：根据《关于支持新型冠状病毒感染的肺炎疫情防控有关捐赠税收政策的公告》(财政部 税务总局公告2020年第9号)规定，企业和个人通过公益性社会组织或者县级以上人民政府及其部门等国家机关，捐赠用于应对新型冠状病毒感染的肺炎疫情的现金和物品，允许在计算应纳税所得额时全额扣除。  因此，不论哪个政府部门(如民政局、卫生局等)，只要符合县级及以上的条件且属于国家机关范围，捐赠者通过他们捐赠就可以享受全额扣除的优惠政策。  **27. 因受疫情影响遭受重大损失或发生严重亏损，纳税人确有困难的企业，对于房产税、城镇土地使用税有什么减免政策？怎么申请？**  答：房产税暂行条例规定，纳税人纳税确有困难的，可由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确定，定期减征或者免征房产税。城镇土地使用税暂行条例规定，纳税人缴纳土地使用税确有困难需要定期减免的，由县以上税务机关批准。  纳税人受疫情影响发生重大亏损导致纳税确有困难的，可按当地有关规定申请房土两税困难减免，具体办理建议咨询当地主管税务机关。  **28. 请问因疫情原因导致企业重大损失或正常生产经营活动受到重大影响的中小企业可申请减免房产税、城镇土地使用税吗？企业的申请流程是什么？**  答：因疫情原因导致企业重大损失或正常生产经营活动受到重大影响的中小企业，如符合当地人民政府和税务部门出台的房产税、城镇土地使用税优惠政策，可申请享受房土两税减免。申请流程建议向当地税务机关咨询。 |

1. 응향진향(应享尽享), 응향쾌향(应享快享) : 누릴 수 있는 건 최대한 누리고, 누릴 수 있는 건 최대한 빠르게 누리도록 한다. [↑](#footnote-ref-1)